경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도

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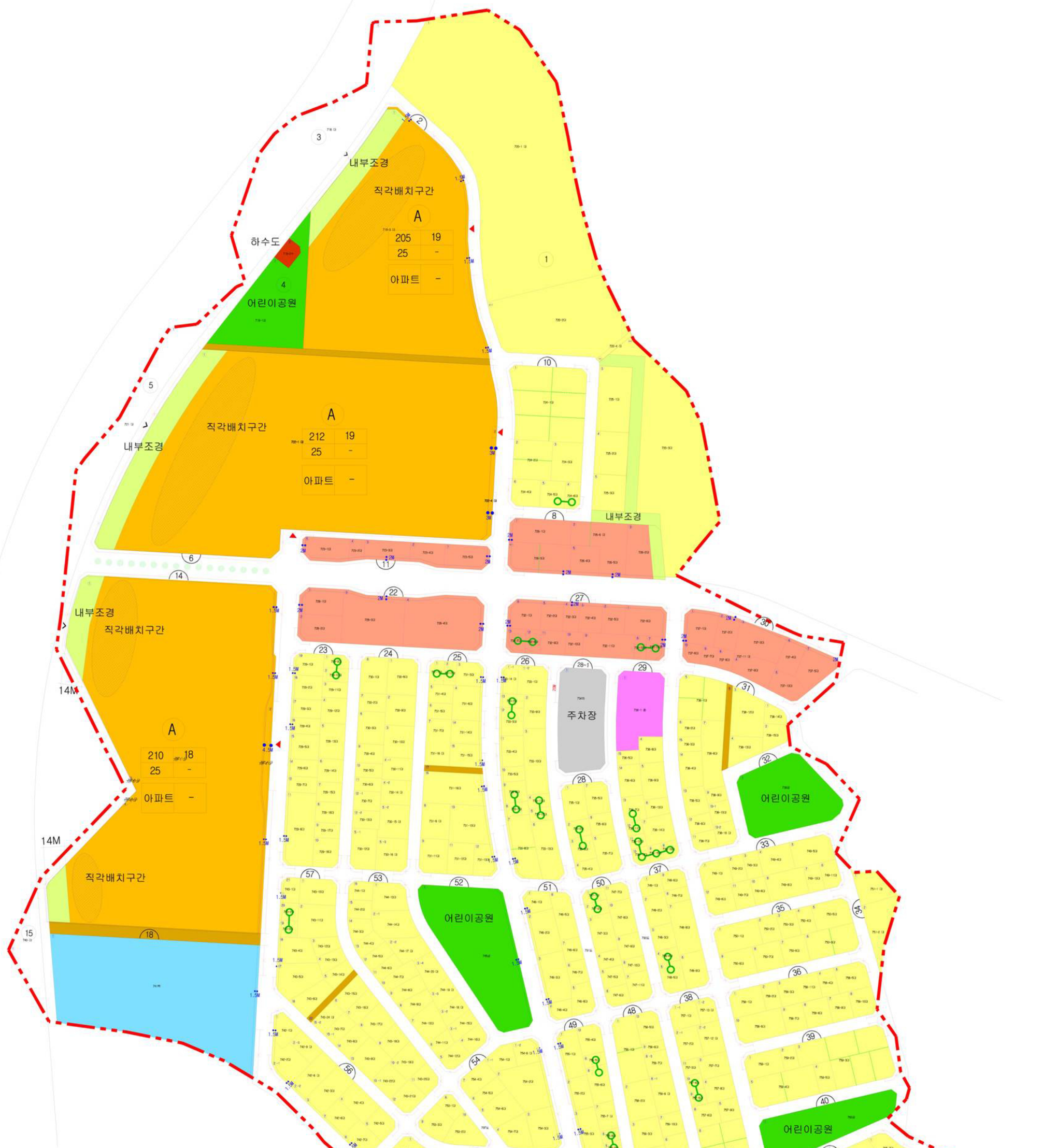

▣ 건축물 용도계획

구분 \ 용도		A	B	C	D	F	G
대상용지		아파트용지	일반용지		학교용지	주차장용지	종교시설용지
허용용도	전층 허용용도	-주택법 제2조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6호 부대시설 제7조 복리시설	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에 따른 [별표1] 용도별 건축물 중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(단, 이목 변전소·양수장·정수장·대피소·공중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외)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(단, 만마시술소, 단란주점, 목외 골프연습장 제외) 제6호 종교시설중 가목 종교집회장 (단,납골당 제외)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소매시장 및 다목 상점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(단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제외)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중 유치원 나목 교육원 및 라목 학원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및 나목 노인복지시설,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린복지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 (단, 목외 골프연습장 제외)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및 나목 중 금융업소 및 사무소 제19호 위험물 저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	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에 따른 [별표1] 용도별 건축물 중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 제2호 공동주택 중 나목 연립주택 다목 다세대주택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유치원 나목 교육원, 라목 학원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, 나목 노인복지시설,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린복지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중 다목 운동장(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.)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※ 기존시설에 한함 : 1BL 1, 2-1, 2-2, 2-3 3, 4, SLOT	-학 교	-주 차 장 (지평식에 한함)	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에 따른 [별표1] 용도별 건축물 중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종교집회장 제6호 종교시설중 가목 종교집회장 (납골당 제외)
	1층 허용용도	-전층 허용용도와 동일	-전층 허용용도와 동일(주거용도 제외)	-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(단, 같은 호 아목-변전소·양수장·정수장·대피소·공중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-제외)	-전층 허용용도와 동일	-	-전층 허용용도와 동일
불허용도		-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-지하층 주거용도	-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(아파트 포함) -지하층 및 지상층(1층) 주거용도	-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(아파트 포함) -지하층 주거용도	-허용용도 이외의 시설	-허용용도 이외의 시설	-허용용도 이외의 시설
권장용도		-	-전층 허용용도 명기사항 중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(단, 같은 호 아목-변전소·양수장·정수장·대피소·공중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-제외)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(단, 만마시술소, 단란주점, 목외 골프연습장 제외)	-단독주택	-	-	-
건폐율		25% 이하	60% 이하	60% 이하	60% 이하	-	60% 이하
기준용적률		205 - 212% 이하	180% 이하	180% 이하	150% 이하	-	180% 이하
층수		18 - 19층 이하	4층 이하	3층 이하	5층 이하	-	3층 이하
비고				지상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우에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 단, 건축물의 용도전체가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함.			

지구단위계획구역 / 건축한계선 / 보행자전용도로 / 보행자우선도로 / 보 행 출 입 구 / 공동개발 (권장) / 차량출입불허구간 / 건축물의 용도 / 용적률,건폐율,높이 / 공동주택단지 주택유형/평형 / 획 지 선 / 획지분할가능선 / 직각배치구간 / 내 부 조 경 / 어 린 이 공 원 / 학 교 / 주 차 장 / 종 교 시 설 / 하 수 도

0 50 100 200M

N